

정의선·사법부 합작, 간접고용 노동자 입 틀어막아

현대차,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농성 막으려 가처분 신청 ... “표현·집회자유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지옥 같은 노동환경을 바꾸자고 했다가 10년, 20년 일한 직장에서 모두 쫓겨났습니다. 노동권·급여를 결정하는 원청 현대차에 호소했는데, 법원이 원청 앞에서 시위하지 말라고 노동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이 11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시위·표현 자유 제한, 현대차 비호 가처분 결정 법원규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14일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현대자동차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데도 현대자동차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대표가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회는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집단해고’, ‘원직복직’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 피켓을 사용할 수 없고, 확성기를 통해 주장하거나 구호를 외칠 수 없게 됐다.

김선영 지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요즘 원청이 진짜 사장이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고 지배력을 행사한다”라며 “대한민국 판사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현대차가 진짜 사장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라고 분노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우리는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노동조합을 지키기 처지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라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 잘못된 결정이므로 기각하더라도 항고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우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법원이 폭행당한 사람에게 아프다고 말도 하지 말라는 격이다”라고

꼬집었다.

안우혁 변호사는 “현대자동차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간접고용이라는 노동법의 두 사각지대를 노려 교묘하게 범죄를 실행하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현대차 대리점주들은 판매연대 조합원들에게 ‘노조 가입 여부를 현대차에 보고했다. 현대차 임원이 노조 탈퇴서를 기다린다’ 등의 말로 압박해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이런 노조파괴를 자행한 대리점주들은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안우혁 변호사는 “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번 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라면서 “판매연대지회가 한 주장과 표현들은 진실하고 정당하다.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5월 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 앞에서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노조파괴 중단, 차별 중단,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금속노조, 최정우 포스코 회장 불법파견 범죄 고발

범죄자 최정우, 하청업체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 ... “포스코의 명확한 불법 즉각 처벌하라”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대표이사들과 하청업체 성광기업, 포에이스 대표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11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범죄자 최정우 회장과 하청업체(성광, 포에이스)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와 지회는 “정부와 사법부는 포스코와 하청업체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불법을 즉시 막아야 한다” 라면서 “포스코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17,000여 명의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라고 촉구했다.

박찬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정부와 사법부가 20년 넘게 불법파견을 묵인, 방조하고 있다” 라며 “금속노조가 하청노동자들과 불법파견 범죄자 엄중 처벌과 판결 이행을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고발 취지 발언에서 “대법원은 7월 28일 포스코가 사내 하청업체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용한 행위는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라며 “포스코는 해당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과 소속이 다른 하청노동자 모두 직접 고용해야 마땅하다” 라고 지적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도급이든 위탁이든 노

동법상 책임 회피를 위한 간접고용은 허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의 기준이 섰다” 라며 “대기업 포스코는 파견법상 직접고용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 이제 민사법원이 아니라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처벌에 나서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 조합원들은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근로자파견업 허가가 없는 하청업체 성광기업, 포에이스로부터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열연, 냉연 등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투입했다” 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포스코는 파견 노동자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라면서 “게다가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 축소하고, 조합원들에게 소송 중단과 노동조합 탈퇴 강요하는 등을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라고 규탄했다.